

2022년도 제2회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I. 추경예산개요

1. 세 입

-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액은 증감 없이 기정 예산 25억 5백만원과 같음.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2022년도					증감율	
	예산		추경예산	증감		기정	당초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2,505,000	2,505,000	2,505,000	0	0	0	0%
지방세수입	-	-	-	-	-	-	-
세외수입	경상적	93,000	93,000	93,000	0	0	0%
	임시적	1,412,000	1,412,000	1,412,000	0	0	0%
보조금	국고보조금등	1,000,000	1,000,000	1,000,000	0	0	0%
	-	-	-	-	-	-	-
보전수입등	보전수입등	-	-	-	-	-	-
	-	-	-	-	-	-	-

2. 세 출

-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1,152억 6천만원으로 기정 예산 1,128억 3천만원 대비 2.2% 증액(24억 2천 4백만원)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2022년도					증감율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104,257,294	112,832,294	115,256,094	10,998,800	2,423,800	10.6%	2.2%	
행정관리	소 계	104,257,294	112,832,294	115,256,094	10,998,800	2,423,800	10.6%	2.2%
	행정 운영경비	113,808	113,808	113,808	-	-	0%	0%
	재무활동	-	-	-	-	-	-	-
	사업비	104,143,486	112,832,294	115,142,286	10,998,800	2,423,800	10.6%	2.2%
교 부 금	-	-	-	-	-	-	-	-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별	2022 예산		2022예산 (추경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기정		증감		비율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4,438,000	4,438,000	6,861,800	2,423,800	2,423,800	54.6%	54.6%
청년 이사비 지원	0	0	2,255,000	2,255,000	2,255,000	순증	순증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	2,838,000	2,838,000	2,956,800	118,800	118,800	4.2%	4.2%
서울시 고립청년 종합 서비스 지원사업	1,600,000	1,600,000	1,650,000	50,000	50,000	3.1%	3.1%

II . 검토의견

-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청년 이사비 지원 (사무관리비, 사회보장적수혜금)” 22억 5천 5백만원, “청년활동지원센터(민간위탁금, 민간 위탁사업비)” 1억 1천 9백만원, “서울시 고립청년 종합서비스 지원사업(사무관리비)” 5천만원 등 총 3건에 24억 2천 4백만원(2.2%)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 내역 〉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 예산과목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증감액	증(감액) 사유
		가정	추경		
	총 계	4,438,000	6,861,800	2,423,800	
세출	청년 이사비 지원	0	2,255,000	2,25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사가 짚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청년가구에 이사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관리비(0백만원→255백만원) ◦ 사회보장적수혜금(0백만원→2,000백만원) </div>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	2,838,000	2,956,800	118,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활동센터 이전(은평→용산)에 따라 추가적인 운영비 필요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금(2,838백만원→2,908백만원) ◦ 민간위탁사업비(0백만원→48백만원) </div>
	서울시 고립청년 종합서비스 지원사업	1,600,000	1,650,000	5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립은둔청년 거버넌스(기획단) 구성 및 매뉴얼 구축을 위한 추경편성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관리비(400백만원→450백만원) </div>

가. 청년 이사비 지원

- 동 사업은 잦은 이사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가구에 이사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운영 용역과 홍보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2억 5천 5백만원과 청년 이사비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20억원으로 총 22억 5천 5백만원을 신규사업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음.

〈 소 요 예 산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2,255,000	0	2,255,000
사무관리비	255,000	0	255,000
사회보장적수혜금	2,000,000	0	2,000,000

〈 세부산출내역 〉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사 무 관 리 비	○청년 이사비 지원 운영 용역 160,000,000원 = 160,000천원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홍보 및 자문 등 회의비 95,000,000원 = 95,000천원
	증감사유 1.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민원 응대 및 신청·접수 지원, 서류·자격 검증, 설문조사, 신청현황 관리·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 콜센터 운영 용역 필요 2. 하반기 신규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홍보 필요 3. 운영용역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심의 및 추후 사업운영에 관한 자문 등 회의비 필요
사 회 보 장 적 수 혜 금	○청년 이사비 지원 400,000원*5,000명 = 2,000,000천원
	증감사유 청년 가구는 평균 거주기간이 짧아 이사가 잦고 그로 인한 높은 이사비용 부담 및 주거 불안정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이사비를 지원하여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 동 사업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청년가구 중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의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약 5,000명을 대상으로 이사비(운반비, 포장비 등)를 1인당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생애 1회)하려는 것임.

〈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지원으로 '약자와의 동행' 가치 실현

□ 추진경위

- 서울 인구는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많아 인구 유출이 장기화되고 있으나 20대 청년은 서울 전입자가 더 많으며, 청년 1인 가구 역시 지속적 증가 추세
 - 서울 청년 1인 가구는 17년 54만 가구에서 20년 67만 가구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1인 가구(139만 가구)의 48% 차지
- 수도권 거주 청년은 타 지역의 청년보다 높은 주거비 부담
- 서울 청년 1인 가구는 전월세 거주 비율이 높고 평균 거주기간이 일반 가구에 비해 짧아 잦은 이사로 인한 주거 불안정 심각
 - 서울 청년 1인 가구의 93.1%가 전월세 거주(월세 65.5%, 전세 27.6%), 청년 1인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1.4년으로 일반가구 6.2년 대비 약 5년 짧음
- 청년 이사비 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22.5.24.)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2. 8. ~ 12.
- 지원대상 :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청년가구(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원규모 : 약 5,000명 (이사비 지원사업 예산범위 내)
- 사업의 주요내용 : 이사비(운반비, 포장비 등) 1인당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 추진방법 :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후 자격검증에 따라 개인별 지급(계좌입금)

□ 2022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2,255,000	
계획수립	2022.05~2022.07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세부 방침 수립
심의 및 자문회의	2022.08~2022.12	5,000	운영기관 용역 제안서평가 심의 및 사업추진관련 자문회의
운영기관 선정 및 수행	2022.08~2022.12	160,000	청년 이사비 지원 운영 용역 선정 및 과업 수행
사업 홍보	2022.08~2022.09	90,000	홍보물 제작 및 온·오프라인 홍보
신청·접수	2022.09~2022.09		참여자 모집공고 및 접수
자격심사	2022.09~2022.10		자격요건 서류심사
선정·지원	2022.11~2022.11	2,000,000	대상자 선정 통보 및 이사비 지급
사업관리·정산	2022.12~2022.12		지원현황 관리 및 정산

- 미래청년기획단은 동 사업 예산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하였는데,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제112조¹⁾ 위반 소지 등의 우려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²⁾에서 청년의 주거안정 등을 위한 이사 비용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관련 사전 법적 근거마련은 충족되었음.

1)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중략)
-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2)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 ③ 시장은 청년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거와 관련한 보증보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청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독립가구를 형성하기 위하여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2022년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01. 사회보장적수혜금

1. 법령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보철구 제작비
2.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회보장적수혜금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저소득계층에 지원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 및 물품
4.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지급하는 예산포함)

○ 또한, 동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³⁾의 협의 대상사업으로, 사업 시행 전에 사전절차로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야하는바, 미래청년기획단은 2022년 5월 25일 보건복지부와 협의 등 사전절차를 완료 하였으나, 보건복지부가 ‘정부 지원사업(국토교통부 저소득가구 이사비용 지원사업 등) 및 관내 기초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과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검토의견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미래청년기획단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3) 「사회보장기본법」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사업 신설에 대한 협의결과 보건복지부 검토의견〉

검토결과	협의완료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근거, 협의기준에 따른 검토 결과 '협의완료' - <u>정부 지원사업* 및 관내 기초 지자체 유사사업과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제외 대상자'에 대한 관리에 유의하여 운영할 필요</u> <p>* 국토교통부 저소득가구 이사비용 지원사업 등</p>

〈 2022년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아.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하며, 중앙정부 또는 상급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 각종 위원회나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예시)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
-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어 재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게 됨

- 동 사업은 학업·일자리 등으로 이사가 잦아 비용 부담이 큰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며, 민선 8기 핵심 과제인 '약자와의 동행'에 포함되는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 지원대상 인원의 적정성, 중복지원 우려,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적절성 등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첫째, 미래청년기획단은 동 사업 계획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청년 가구 중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에 해당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 5천명에게 1인당 최대 40만원 한도내에서 이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바,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총조사 및 국내인구이동 통계’를 살펴보면, 서울시 청년 1인가구는 2020년 기준 67만 3천명으로 나타나고, ‘2020년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서울시 청년 1인 가구 중 전세보증금 6천만원 이하는 전체의 15.0%, 월세 40만원 이하는 전체의 46.1%에 해당한다고 나타나고 있음.

〈 사업 지원 대상 〉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청년 가구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가족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22년 기준 만 19세~39세(1982년~2003년생), 신청일 기준 전입신고 완료자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 (소득기준)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거주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거주 무주택자 ※ 단, 월세 4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55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공고문 참조) (제외기준) 직계존속(부모) 소유의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서울로 전입 후 중앙부처 및 자치구 등에서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	--

< 서울시 1인가구 및 청년 1인가구 현황 >

(단위: 명)

구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	2010년
전 연령	1,390,701	1,299,787	1,229,421	1,180,540	...	854,606
청년(20~39세)	672,565(48%)	621,619(48%)	578,491(47%)	548,761(46%)	...	432,960(50%)

< 서울시 청년 1인 가구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 월세액4>

(단위 : %)

구분	6천만원 이하	6천~1억원	1억원~1.7억원	1.7억 초과	무응답
전세 보증금	15.0	34.3	30.4	16.1	4.4
구분	1천만원 이하	1천만~3천만원	3천만~6.5천만원	6.5천만원 초과	무응답
월세 보증금	59.3	19.1	15.4	3.6	2.5
구분	40만원 이하	40~45만원	45~50만원	50만원 초과	무응답
월세액	46.1	11.0	18.6	24.2	2.5

○ 따라서, 청년들의 급박한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이사비 마련으로 청년의 어려움을 해소 또는 완화하기에 편성 예산이 과소한 것은 아닌지, 오히려 지원을 받지 못한 청년들이 소외될 소지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유사 청년 정책인 '청년월세지원사업'은 2021년 27,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바 있음.

- 청년월세지원사업: 만 19~39세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 x 10개월의 월세 지원금 지원

<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과부담 현황 >

(단위 : 가구)

구분	주거비 과부담 가구 (RIR* 25% 초과 또는 HCIR** 30% 초과)	심각한 주거비 과부담 가구 (RIR 45% 초과 또는 HCIR 50% 초과)
청년1인 가구	133,000 (청년 전체 1인 가구의 19.8%)	53,000 (청년 전체 1인 가구의 7.9%)

* RIR : 월 소득 대비 월 임차료, ** HCIR : 월 소득 대비 월 거주비(월 임차료 + 월 주거관리비)

※ 주거비 과부담 청년 1인 가구는 13만명으로 전체 청년 1인 가구의 20% 차지

- 둘째, 미래청년기획단은 청년 1인에게 지급하는 이사 지원 금액을 40만원으로 산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근거를 살펴보면,
 - ‘2020년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1인 가구의 78%가 주택연면적기준 40㎡ 이하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의 이사비 산정 기준을 토대로 계산하면 평균 34만원에서 최대 44만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청년 이사비 지원액 산출 근거(미래청년기획단 제출) 〉

□ 청년 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액 산출근거

- 청년 1인 가구의 거주면적*을 고려한 소형, 원룸 주택의 평균 운반비, 포장비, 노임비를 합산한 비용 : 평균 34만원에서 최대 44만원 소요

* 청년 1인 가구의 78%가 40㎡ 이하에 거주 (2020년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의 이사비 산정 기준을 토대로 1톤 이하의 화물 운반비 (5~24만원), 포장비(3~5만원), 인부 1인 노임비(15만원)를 합산

※ 이사비는 이동거리, 이삿짐의 양, 주거형태(예시 : 엘리베이터가 없는 고층, 옥탑방 등은 비용 추가), 포장이사 등 서비스 범위에 따라 차이 발생

〈 세부 산출내역 〉

- 이사비 : 보통인부 1인 노임, 1톤 이하 화물 운임비, 포장비 합산

〈 용달화물 주요 구간별 화물 운임 및 이사비용 〉

(21 화물운송시장 동향 연간보고서, 단위: 원)

구분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수도권 내	대전권 → 수도권	대구권 → 수도권	
보통인부 1인 노임 (A)		148,510			
화물 운임(1톤 이하) (B)	47,509	116,111	143,000	172,286	236,364
포장비(C=(A+B)×0.15)	29,402	39,693	43,726	48,119	57,731
총 이사비 (A+B+C)	225,421	304,314	335,236	368,915	442,605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55조제2항별표4) 33㎡ 미만 이사비 기준 준용

주택연면적기준	이사비		
	임금	차량운임	포장비
1. 33제곱미터 미만	3명분	1대분	(임금 + 차량운임) × 0.15
2. 33제곱미터 이상 49.5제곱미터 미만	4명분	2대분	(임금 + 차량운임) × 0.15

○ 미래청년기획단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른 이사비 산출 기준 외에도, 실제 이사비용은 이동거리, 이삿짐의 양, 포장이사 여부, 옥탑방 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고층 건물 등 주거형태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서비스 범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 청년 1인가구의 평균 이사비용 소요 금액을 이사비용 견적 사이트 또는 용역을 통한 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인 소요비용을 추산할 수 있도록 미래청년기획단의 세심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셋째, 본 사업은 미래청년기획단이 용역 계약을 통해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의 민원 응대 및 신청접수 지원 등을 하려고 하나, 행정안전부 「202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살펴보면, ‘사무관리비’로 집행 가능한 용역비는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로 규정하고 있는바,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사무관리비’ 예산을 용역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행정안전부 「202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01. 사무관리비

1. 일반수용비

가.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 1) 당직용 침구 구입 및 세탁비
- 2) 기본사무용품비 : 부서내 일반사무비와 기타용품비
- 3) 기타수용비 : 범용 S/W 구입비, 도서구입비, 기기구입비, 소규모 수선비, 일반수수료, 관보구독료 등

나. 필기구, 용지대 등 사무용 잡품비

다.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라. 현수막, 간판 등의 안내·홍보물 제작비 및 기관(관서)의 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 제작비

마.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405(자산취득비)에 계상하기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모성 물품구입비

바. 신문, 잡지, 관보, 팸플릿, 마이크로필름 등의 구입비

사.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광고료 및 광고료

- 1) 물품 및 용역 등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광고료는 해당 물품 및 용역 등의 구입비목에 계상
- 2) 보도사례금은 계상할 수 없음

아. 기계·기구·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의 수선비는 401-01(시설비)에 계상

자. 기 타

- 1) 물품위탁취급수수료(자산취득시는 자산취득비에 포함) 및 업무대행수수료
- 2) 등기 및 소송료
- 3) 전문검정기관에 의뢰하는 검정료, 토지·건물 평가 등의 감정료, 수질검사시험·콘크리트 강도 시험 등의 시험료
- 4) 하역료·승선료·관세 등의 외자조작비
- 5)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및 차고료
- 6) 물품의 운송대
- 7)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및 하차료
- 8) 외국환 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와 공모지방채발행제경비
- 9) 국선변호사 및 수입·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외국어통역비
- 10) 속기료, 원고료, 측량수수료등 각종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수수료(현상모집의 경우등 현상금이 수수료 적일 때에는 포함)

11)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

12) 지방세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시 지방세입금 수납대행 계약에 따라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수수료

※ 지방세 납부시스템 및 서비스 혁신계획(지방세정책과-1641, 09.7.12) 참고

- 미래청년기획단은 사무관리비를 통해 ‘청년 이사비 지원’ 수행에 필요한 용역비로 1억 6천만원을 편성하고 있는 바,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가 아닌 과도한 용역비 편성은 아닌지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 체계에 맞는 적정 예산 과목 편성을 위한 미래청년기획단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세부산출내역 〉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사무관리비	○청년 이사비 지원 운영 용역 160,000,000원	= 160,000천원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홍보 및 자문 등 회의비 95,000,000원	= 95,000천원

- 넷째, 미래청년기획단은 동 사업에 대한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도 전에 언론에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예산을 확정된 사업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의회를 경시하였는바, 이는 중대한 의회의 권한 침해로 미래청년기획단은 자의적인 예산 편성과 의회에 대한 심의의결권 침해 행정 행태를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미래청년기획단 동 사업 관련 보도자료 배포 현황〉

날짜	보도자료 제목	주요 내용
2021.10.27.	서울시, 대중교통요금·이사비용... 청년이 겪는 일상 속 불편 제거	<'청년이 바라는 일상지원' 3대 시리즈 정책 - ①청년패스(PASS)> 서울시, 대중교통요금·이사비용...청년이 겪는 일상 속 불편 제거 - 오세훈 시장 취임사에서 밝힌 '청년서울' 실현할 우선추진사업 3대 분야 11개 정책 - 이동 잦지만 소득 적어 부담 '대중교통요금' 19세~24세 모든 청년에 연 최대 10만원 - <u>청년체감 최대 교통 주거비 교통 덜기 위한 1인당 40만 원 상당 '이사비용지원'</u> - 사정부 1천 개 넘는 청년정책 통합 '청년 몽땅 정보통', 만성질환 예방 건강관리 지원

- 한편,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은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를 2021년 10월 15일에 제출(「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22.2.21.가결)한 바 있고 동 사업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2021.10.27.)하였으며 사업의 내용 및 성격을 감안해볼 때,
 - 긴급한 수요에 대한 대처를 목적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2022년 본예산 편성 당시 꼼꼼한 예산 편성과 심의를 통해 사업 추진이 이뤄졌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미래청년기획단은 사업의 계획, 예산편성 등에 있어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합리적인 사업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

- 청년활동지원센터가 용산구로 이전함에 따라 관련 관리비와 청소관리인력 용역비를 위한 민간위탁금 7천만원과 공간 조성 및 물품구매 등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4천 8백만원 등 총 2건에 1억 1천 9백만원을 증액조정하려는 것임.

〈 소 요 예 산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2,956,800	2,838,000	118,800
민간위탁금	2,908,800	2,838,000	70,800
민간위탁사업비	48,000	0	48,000

〈 세부산출내역 〉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민 간 위 탁 금	○관리비(공공요금 포함) 8,000,000원 * 6개월 = 48,000천원
	○청소관리인력(3명, 월~금요일 3시간) 용역비 3,800,000원 * 6개월 = 22,800천원
	증감사유 22.7월 청년활동지원센터 이전으로 관리 공간이 확대(연면적 218.07㎡ → 2,281.25㎡)되어 관리비가 증가, 청소인력 별도 필요
민 간 위 탁 사 업 비	○활동지원센터 이전에 따른 시설 및 공간 조성 스튜디오 시설 조성(38,000천원) 및 물품 구매(10,000천원) = 48,000천원
	증감사유
	22.7월 청년활동지원센터 이전으로 청년지원 교육을 위한 공간 조성 필요

- 서울청년센터의 광역센터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센터를 시 추진사업을 위한 공간 조성 및 교육 등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기존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서 용산구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관리공간이 확대(청년활동지원센터 연면적 증가:(은평)218.07㎡ → (용산)2,281.25㎡)됨에 따라 관리비가 증가하고 청소인력이 별도로 필요하게 되어 동 추경예산의 증액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이전·조성 계획 〉

이전계획

대 상	현 위치	'22. 7월 이전 예정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21동 2층	용산구 원효로1가 104번지 일대 (역세권 청년주택 건물 2층 일부)

조성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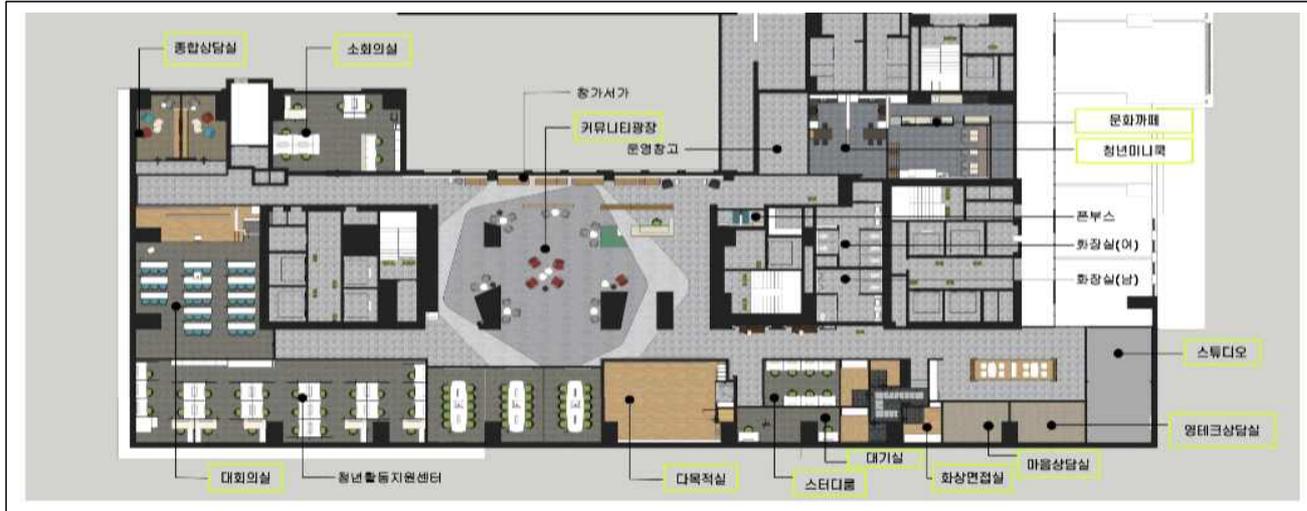
- 조성기간 : 2021. 1. ~ 2022. 7.
- 위 치 : 용산구 원효로1가 104번지 일대(역세권 청년주택 건물 2층 일부)
- 규 모 : 연면적 2,281.25㎡
- 공간구성 : 커뮤니티광장, 운영사무실, 상담실, 회의실, 다목적실 등

시설개요

- 조성기간 : '21. 1. ~ '22. 7.
- 위 치 : 용산구 원효로1가 104번지
- 규 모 : 연면적 2,281.25㎡
- 공간구성 : 커뮤니티광장, 사무실, 상담실, 회의실, 다목적실 등

구 분	비 고
중 앙 홀	안내데스크, 오픈서가, 폰부스
사 무 / 상 담 공 간	사무실, 대회의실, 소회의실, 종합상담실, 마음상담/영테크상담실
취 미 / 창 업 공 간	다목적실, 화상면접실, 스터디룸, 스튜디오(방송실),
커 뮤 니 티 공 간	커뮤니티 광장, 미니극, 문화카페 등

□ 공간배치도



□ 공간 운영기준

○ 취업청년 지원을 위한 화상촬영, 화상면접을 위한 공간 조성·운영

- 최근 비대면 교육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스튜디오’를 조성하여 상담사 비대면 교육, 교육자료 촬영/송출, 방송실로 활용

※ 현재 서초·강서 오랑에만 2~3인실 스튜디오가 조성되어 있음

- 화상면접을 위한 3개의 단독공간을 조성하고, 필요한 장비(노트북, 웹캠 등)를 대여하여 청년들이 취업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스터디룸(7인)은 1인 창업자나 개인별 학습공간으로 이용

○ 市 추진사업을 위한 단독 공간 조성 등으로 사업홍보 및 효과확대

- 시에서 추진중인 마음상담, 영테크 사업을 위한 전용공간 확보
- 청정넷, 청년인생설계학교 등 市 추진 사업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간을 무료로 연계하여 청년들의 편의성 제고 및 사업효과 극대화

○ 다수의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대관 및 청년센터와 공간공유

- 청년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을 통해 공간 대관(유료) 실시

※ ‘22.8.1.부터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 대관 지원

- 대회의실, 소회의실, 스튜디오, 종합상담실은 청년센터와도 공유하여 공간제약으로 인한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

공간별 이용형태

이용형태	공 간 명
대 관 (사전예약)	종합상담실, 대회의실, 소회의실, 다목적실, 화상면접실, 스튜디오
일반이용시설	스터디룸, 대기실(휴게), 청년미니극, 문화카페, 커뮤니티 광장

□ 공간별 세부 운영안

구 분	기능/용도	시설특색	보완사항
<p>대관/예약</p> <p>종합상담실 (2ea)</p> <p>1실 : 18.23㎡ 2실 : 18.5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소규모상담 · 마음상담, 영테크 상담 · 청년센터 공간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 테이블(1) ※ 모니터 설치시 시청각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음기능 보완 (방음커튼 등)
<p>대관/예약</p> <p>대회의실 112.6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연 및 회의 공간 · 市 청년사업 공간지원 (청프, 인생설계학교 등) · 청년센터 공간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40명 수용 가능 · 무대 있음 · 빔프로젝터, 음향시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빔프로젝터 · 스크린 · 앰프 · 스피커 · 무선 마이크
<p>대관/예약</p> <p>소회의실 (3ea)</p> <p>1실 : 25.45㎡ 2실3실 : 25.0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및 모임 공간 · 市 청년사업 공간 지원 (청프, 인생설계학교 등) · 청년센터 공간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실 당 10명 수용 가능 · 1개 개별공간, 2개는 개별 및 통합 운영가능 · 빔프로젝터, 음향시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빔프로젝터 · 스크린 · 앰프 · 스피커
<p>커뮤니티광장 527.8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객 담소, 인터넷, 독서 등 자유 이용 ※ 이용상황을 보고 추후 변경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공간의 중앙에 위치 · 이동 테이블, 의자 구비 · 개방된 공간 모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앰프 · 스피커

구 분		기능/용도	시설특색	보완사항
<div style="background-color: #008000; color: white; padding: 2px; font-weight: bold;">대관/예약</div> 다목적실 61.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체육, 자세교정 프로그램 운영 · 관련 외부업체 연계 및 공공예약서비스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쪽 벽 전체 거울 설치 · 음향시설 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피커 · 운동 매트 · 폼롤러 등
대기실 21.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목적실의 대기실 ※ 평소엔 직원 및 시설 관리인력의 휴게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실 이용 가능(2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파, 액자 등
스터디룸 20.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마드오피스 · 개인별 학습공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칸막이 책상 및 의자(7인) · 복사 및 프린터기 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기 등
<div style="background-color: #008000; color: white; padding: 2px; font-weight: bold;">대관/예약</div> 화상면접실 (3ea) 1실 : 9.17㎡ 2실 : 7.84㎡ 3실 : 6.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상면접 공간 · 필요시 강연자 대기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식 형태의 협소한 공간으로 인터뷰실 개조 · 각 개별공간으로 독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트북 및 웹캠 · 크로마키 등
<div style="background-color: #008000; color: white; padding: 2px; font-weight: bold;">대관/예약</div> 스튜디오 44.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영상 촬영, 송출 · 영상회의, 상담사 비대면 교육 · 청년센터 공간 지원 (오랑 요청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공실 형태로 되어있어 공간조성 필요 ※ 추경 반영시 하반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튜디오 시설 - 방송시설 설치 · 방송·영상 촬영 및 편집 기자재
마음상담실 16.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상담 전용상담실로 운영 ※ 필요시 간단한 회의, 소규모 커뮤니티 활동공간으로도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테이블 및 의자 구비 · 복도 4인 테이블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테이블 및 의자 · 회의 모니터

구 분		기능/용도	시설특색	보완사항
영테크상담실 18.13㎡		· 영테크 전용 상담실로 운영 ※ 필요시 간단한 회의, 소규모 커뮤니티 활동공간으로도 활용	· 회의 테이블 및 의자 구비 · 복도 4인 테이블 배치	· 회의 테이블 및 의자 · 회의 모니터
청년미니쿡 (청년쉼터 I) 36.56㎡		· 간단한 음식물 요리, 섭취 장소로 활용 ※ 청년 먹거리 커뮤니티, 친목, 동호회 등 지원	· 아일랜드 식탁(2인) · 2개 주방 사용 가능 · 인덕션, 전자레인지 구비 · 창업공간 근처	· 인덕션 · 전자레인지 · 기본 주방용품
문화카페 (청년쉼터 II) 62.91㎡		· 이용객 휴식장소 · 음식물 섭취 가능 ※ 스크린 설치, 책 구비 등 통해 테마영화 상영, 북토크 등 행사	· 2인 테이블(1), 4인 테이블(2) · 싱크대 있음(화구 없음)	

□ 운영시간

○ 사무공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그 외 시설은 연장 운영

- (사무실) 평일 9시~18시, 토·일요일 미운영
- (사무실 외) 평일 10시~ 22시, 토요일 10시~ 17시
- ※ 일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미운영

□ 운영관리

○ 대관가능한 공간은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을 이용하고, 사용료 징수

- '22.8.1.부터 외부 청년들이 청년활동지원센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에 공간현황 및 이용방법 등록
- '서울특별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이용자에게 시설을 제공하고, 사용료 징수 [붙임 1 참조]
- ※ 공간이용 현황에 따라 사용료 및 대관 가능 공간 조정 가능

○ 市 및 서울청년센터가 공간을 이용하는 경우 무료 지원

- 마음건강·영테크 전용상담실은 전용으로 운영하되, 해당 사업의 이용자가 없는 경우 다른 목적으로 시설 제공 가능
- 회의실, 스튜디오, 상담실 등은 청년센터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무료 지원

○ 공간관리를 위한 **직원 별도 채용 및 용역을 수행**하여 시설관리

- 시설 이용청년 지원을 위하여 2명의 별도인력(6개월 기간제, 정원 외 인력) 채용하여 공간관리 업무 전담하고, 필요 시 사무직원들이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

※ 청년활지센터 '22년 정원 32명으로, '23년부터 업무 축소·개편으로 정원 내에서 공간관리 인력 배치

- 관리공간 증가로 청소용역을 별도로 발주하여 관리

※ 청년활동지원센터 연면적 증가 : (은평)218.07㎡ → (용산)2,281.25㎡

□ **향후일정**

○ 청년활동지원센터 사무공간 이전 : '22.7.1

○ 각종 기자재 구비·배치 등 시설구성, 운영준비 : '22.7.13까지

※ 스튜디오는 '22년 2차 추경 확정 후 하반기 별도 조성

○ 공간관리 인력(기간제) 별도 채용, 청소용역 추진 : '22.7월 중

○ 청년활동지원센터 개소 : '22.8.1

○ 다만, 미래청년기획단은 센터 이전에 따른 물품 구매비용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바, 사무실 물품 구매는 포괄예산으로 자의적인 집행이 되지 않도록, 내구연한 확인과 기능 이상 여부 등 사전에 정확한 수요조사에 입각하여 추진하고, 자재창고 물품 등을 활용한 예산절감 노력을 수반하여 면밀한 예산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미래청년기획단과 민간위탁기관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미래청년기획단이 민간위탁기관의 물품관리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도 필요하다고 하겠음.

○ 한편, 동 사업은 최근 3년간 집행잔액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바, 예산 편성 후 사업집행에 따른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의 여지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미래청년기획단은 민간위탁 예산이 적기·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최근 3년간 결산 및 집행현황 〉

(2022년 06월 30일 기준)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9	4,171,658	0	0	4,171,658	4,101,065	0	70,593
2020	3,810,000	0	0	3,810,000	3,678,759	0	131,241
2021	3,648,138	0	0	3,648,138	3,619,836	0	28,302
2022	2,838,000	0	0	2,838,000	2,295,996	0	542,004

- 또한, 그동안 혁신파크에서 상징적 의미를 가지던 청년활동지원센터가 이전한 만큼 기존에 동 센터를 이용해오던 청년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이용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의 홍보를 통해 청년 활력 종합공간으로 거듭나도록 미래청년기획단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다. 서울시 고립청년 종합서비스 지원사업

- 동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고립청년과 은둔청년의 발굴 및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청년의 사회안전망 진입 유도 및 고용 촉진을 위한 것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으로 ‘스마트 케어’시스템 운영 매뉴얼 구축 및 전문 기획단을 구성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5천만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 소 요 예 산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1,650,000	1,600,000	50,000
사무관리비	1,650,000	1,600,000	50,000

〈 세부산출내역 〉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사 무 관 리 비	○고립·은둔청년 전문 기획단 구성(회의 참석수당 등) 200,000원*9명*7회 = 12,600천원
	○고립·은둔청년 전문 기획단 구성(기타 발제비 등) 200,000원*5회 = 1,000천원
	○운영 단계별 매뉴얼 구축 용역 36,400,000원 = 36,400천원
	증감사유
	1. 고립·은둔 청년 「스마트 케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문가(정신병리 전문가, 임상심리 전문가 등 관련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기획단 구성 2. 스마트 케어 시스템 운영 단계별 매뉴얼 구축 - 고립·은둔 청년 유형별 과학적·체계적 진단 - 고립·은둔 청년의 정확한 이해에 따른 표준화된 상담 - 고립·은둔 청년의 다양한 요인·특성에 따른 효과적 치료 프로그램 처방 지원 - 맞춤형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체계 구축 및 성과평가 기준

- 동 사업은 고용노동부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민간 전문기관 용역사업(공모)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국비 10억원을 매칭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임.

〈 2022년 서울시 고립청년(청년도전) 지원사업 추진계획 〉

추진방향

- ◆ '22년도 「고립청년 지원사업」은 기존 「고립청년 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및 내용이 유사한 「고용노동부 청년도전 지원사업」과 국·시비 매칭하여 추진
- ◆ 우리 시, 운영기관(영리, 비영리법인 등)과 컨소시엄 구성 후 사업 수행
 - ※ 2022년 서울시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 계획(미래청년기획단-1116호, 2022.1.25.)에 따라, 우리 시와 함께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수행할 컨소시엄 기관 선정

□ '22년 「고립청년 지원사업(청년도전 지원사업)」 추진

○ 지원대상 : 만18~34세¹⁾ 청년 중 구직단념청년²⁾, 자립준비청년³⁾,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년⁴⁾, 지역특화 고립청년⁵⁾ 1,000명

- 1) 고용노동부 「청년도전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원대상 연령은 만18~34세로 설정
- 2)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 직업훈련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인 청년
- 3)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 4)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보호한 청년
- 5)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약 300명)

○ 소요예산 : 1,200,000천원 (국비 : 1,000,000천원 /시비 : 200,000천원)

○ 지원절차

단계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절차	신청	승인 및 선정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진행 및 밀착상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내용	워크넷 회원가입 및 신청	자격확인 및 승인 (문답표, 척도 활용)	상황/욕구에 따른 프로그램 진행 및 연계	취업지원서비스, 생계지원

○ 지원대상 유형 분류

- 고착지속형 / 관계유지 곤란형, 심리·건강 불균형
 - ▶심리정서적 문제로 대인관계 및 사회이행의 곤란함이 장기화하는 유형
 -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유형
- 문제반복형 / 경험부재형, 생계형
 - ▶문제상황을 반복하여 사회이행에 대한 의지나 상황이 저하되기 쉬운 유형
 - ▶고착지속형으로 변화할 위험성이 높은 유형
- 진로미숙형 / 진로제한형, 정보제한형
 - ▶제한적 정보 및 잘못된 정보로 사회이행에 곤란함을 겪고 있는 유형
 - ▶사회성과 기초 직업능력이 있어 맞춤형 개입시 사회이행이 빠른 유형

○ 지원내용

- 맞춤형으로 프로그램 지원

대영역		프로그램명	세부 내용	시간
필수	①밀착상담	초기상담 및 영역별사정	참여 적격성 평가 및 서비스 계획 수립을 위한 검사 및 사회진단(개별 욕구사정) 등	2
	②사례관리	과정 모니터링	정책 연계, 대상별 프로그램 이수 현황 모니터링, 참여 전/후 종합분석를 통한 중도이탈 방지	2
공통	③관계기술 프로그램	자기이해	성격 분석, 불안요소 탐색, 강점찾기 등	8
		관계형성	대인관계 강의, 배려와 공감의 이해 등	
	④진로탐색	자기탐색	진로관련 검사 및 직업 가치관 탐색, 현직자 강연 등	10
		진로재탐색	직업에 대한 가치관 확립, 적성 찾기 등	
⑤취업역량강화	일머리교육	직장생활 소통 특강, 사회생활 적응을 위한 자세 코칭 등	10	
	취업역량강화	이력서·자소서 작성 팀, 면접 트렌드 분석, 취업 특강 등		
선택	⑥지역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진로컨설팅, 자격증 스터디, 소그룹 커뮤니티, 심리상담 등 권역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심화 프로그램 진행	8
	위기 관리	지역복지 자원연계	참여청년 5~10%를 개인적 특성과 고립정도에 따라 집중대상으로 분류하여 심층 사례관리 및 위기 지원	수시
합 계				40

- 각 영역별 1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총 편성 시간(40시간)의 80% 이상 참여 시 이수로 인정되어 인센티브(1인당 20만원) 지급

○ 유형별 권장 맞춤 프로그램 구성 계획(안)

- **고착지속형** : 자기이해, 자기탐색, 일머리교육, 위기관리, 심리정서지원 등
- **문제반복형** : 자기이해, 진로재탐색, 일머리교육, 진로컨설팅, 소그룹커뮤니티 등
- **진로미숙형** : 관계형성, 진로재탐색, 취업역량강화, 진로컨설팅, 자격증 스터디 등

○ 운영기관 (서울시-컨소시엄 구성)

권역	수행기관	권역	수행기관
중앙센터	권역센터 총괄 및 프로그램 기획 ▶ 한국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남부센터	동작, 금천, 관악, 서초 담당 ▶ 양재종합사회복지관
중부센터	성북, 종로, 중구, 용산 담당 ▶ 생명의전화 종합사회복지관	북부센터	도봉, 강북, 노원 담당 ▶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서북센터	은평, 서대문, 마포 담당 ▶ 녹번종합사회복지관	동북센터	중랑, 동대문, 성동, 광진 담당 ▶ 면목종합사회복지관
서남센터	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 ▶ 목동종합사회복지관	동남센터	강남, 송파, 강동 담당 ▶ 강동종합사회복지관

- 비경제활동인구 및 장기미취업자에 속하는 청년층 인구가 증가하여 고립 청년이 증가하는 사회적 문제에 따라 심층상담 및 공공서비스 지원을 통한 청년 정책을 확대 시행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민간 전문기관의 용역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과 같이 미래청년 기획단이 편성한 ‘사무관리비’ 예산을 용역사업에 집행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행정안전부 「202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살펴보면, ‘사무관리비’로 집행 가능한 용역비는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로 규정하고 있음.

- 미래청년기획단은 사무관리비를 통해 ‘스마트 케어’시스템 매뉴얼 구축에 필요한 용역비로 3천 6백만원을 편성하고 있는 바,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가 아닌 과도한 용역비 편성은 아닌지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 체계에 맞는 적정 예산과목 편성을 위한 미래청년기획단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라. 집행실적 저조 사업에 대한 검토

- 2022회계연도 미래청년기획단 소관의 각 사업별 예산집행현황 (2022.6.30.기준)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60%이상 미집행 되어 집행률이 저조한 다음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직 개편에 따른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의 발굴을 통한 추가적인 예산 감액조정 필요성에 대한 점검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특히,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행사운영비)”, “서울청년 시민회의 및 청년거버넌스 운영 지원(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서울미래인재육성 및 활동 지원(국외업무여비)”, “서울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운영(시설비)”,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청년 대중교통요금 지원(기타보상금)”,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운영(시설비)” 등은 예산 집행실적이 전무하고,
- “청년 마음건강 상담지원 확대 및 긴급지원(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등 12개 사업들도 집행실적이 저조한 바, 미래청년기획단은 당해 사업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한 적극적인 예산집행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미래청년기획단 60%이상 미집행사업 현황(2022.6.30.기준) 〉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 현액 (가)	지출 원인 행위액	지출액 (나)	지출 잔액 다=(가-나)	미집행률 다/가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7,373	2,813	2,813	4,560	61.85%
	사무관리비	706,127	68,150	63,150	642,977	91.06%
	행사운영비	100,000	0	0	100,000	100.0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00	20,000	20,000	0	0%
	특정업무경비	30,000	14,844	14,844	15,156	50.52%
서울청년 시민회의 및 청년거버넌스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247,500	205,850	154,890	92,610	37.42%
	공공운영비	24,000	0	0	24,000	100.00%
	행사운영비	30,000	0	0	30,000	100.0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0	4,100	4,100	900	18.00%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	190,000	10,000	10,000	180,000	94.74%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3,504,628	3,422,318	3,422,318	82,310	2.35%
서울미래인재 육성 및 활동 지원	사무관리비	105,000	300	300	104,700	99.71%
	국외업무여비	10,000	0	0	10,000	100.00%
청년일자리 '1,00개의 꿈' 추진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7,552,561	2,895	2,895	7,549,666	99.96%
	사무관리비	1,227,439	694,487	694,487	532,952	43.42%
서울 청년수당	사무관리비	230,000	9,000	9,000	221,000	96.09%
	사회보장적수 혜금	60,000,000	28,815,500	28,815,500	31,181,500	51.97%
서울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운영	사무관리비	66,000	33,000	33,000	33,000	50.00%
	공공운영비	27,500	3,205	3,205	24,295	88.35%
	민간위탁금	1,955,000	1,374,345	1,374,345	580,655	29.70%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90,888	40,744	40,744	50,144	55.17%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 현액 (가)	지출 원인 행위액	지출액 (나)	지출 잔액 다=(가-나)	미집행률 다/가
	시설비	35,000	0	0	35,000	100.00%
서울 청년포털(청년 몽땅 정보통) 운영	사무관리비	26,990	26,970	26,970	19,560	0.07%
	공공운영비	215,500	42,914	2,029	213,471	99.06%
	전산개발비	153,815	153,815	116,820	36,995	24.05%
청년의 건강한 재정출발지원(영테크)	사무관리비	450,000	446,500	228,250	221,750	49.28%
	기타보상금	1,000,000	257,720	257,720	742,280	74.23%
서울 전입 청년 웰컴박스 지원	사무관리비	300,000	3,000	3,000	297,000	99.00%
청년 마음건강 상담지원 확대 및 긴급지원	사무관리비	268,800	62,600	62,600	206,200	76.71%
	기타보상금	2,730,00	277,820	277,820	2,452,180	89.82%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150,000	75,000	75,000	75,000	50.00%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100,000	0	0	100,000	100.00%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사무관리비	500,000	83,500	83,500	416,500	83.30%
	기타보상금	15,000,000	0	0	15,000,000	100.00%
청년프로젝트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	234,834	44,834	44,834	190,000	80.91%
	민간경상사업 보조	1,800,000	900,000	900,000	900,000	50.00%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운영	사무관리비	66,000	33,000	33,000	33,000	50.00%
	민간위탁금	229,500	120,754	120,754	108,746	47.38%
	시설비	24,548	0	0	24,548	100.00%
청년 인생설계 학교	사무관리비	950,000	7,952	7,952	942,048	99.16%

마. 의회의 예산심의권 침해 우려

- 「지방자치법」 제145조5)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6)에는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본 예산안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42조7)에 따라 의회의 충분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시장의 예산안 제출시기를 현행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이번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6조 3,709억원을 증액 편성하고도 제311회 임시회 개최일(7월 15일)의 불과 이틀 전인 7월 13일에 제출되었는바, 민선 8기 출범 후 첫 번째 추경인점을 감안하더라도 미래청년기획단이 제출한 추경예산 편성 사업은 이와 관련 없이 기존부터 추진되어오던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 “서울시 고립청년 종합서비스 지원사업” 등이 편성되어 있어 긴급을 요한다고 볼 수 없고,
 -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충분한 검토 및 심의에 시간적 제약이 뒤따르게되어 의회의 심의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편법적인 행정절차로 보이는바, 이러한 악습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행정절차를 엄수하도록 하는 집행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행정자치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민정

-
- 5)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6)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안의 제출·발의) 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7)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